

공사는 현재 시공단계인데 돌연 학교측이 반대하는바, 학교측의 승락과 협의에 의해 추진한 본 도로개설공사에 차질이 있을 수 없으니, 즉시 공사의 착공을 청원함.

3. 취지설명요지

(소개의원 손용호의원)

송문중고등학교 경내로 흐르는 선통물천을 복개하여 15미터 도로로 개설코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완료되어 예산을 확보 시공단계에 있으므로, 청원인들의 청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건재)

동 사업은 당해지역 주민과 학교 및 관계기관의 사전협의가 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전병만위원) : 현지확인을 해 본 바 교육환경을 위해서 학교측에서 학교부지를 제공하면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지 않은가?

○답변요지(건설국장 강창구)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학교부지를 사학재단에서 기부채납할 수 있을지도 모르며, 설사 기부채납을 한다 하더라도 도로의 거리가 38미터인데 도로의 구매가 구청에서 측량한 결과 14%로 도로로서의 효율성이 현격하게 떨어짐. 기본 도로 경사는 6%, 최고치라 해도 10%이상 되면 도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음.

6. 토론요지

김종열위원 :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

7.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의견 : 별첨

10. 기타사항

○현장답사

• 일시 : '93. 5. 17 14:00~16:00

• 내용 : 송문중고등학교 교장등 교직원을 면담하고 송문중고등학교 경내에 있는 선통물천을 답사한 후, 우회도로를 낼 수 있는지 등 지역여건 조사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조속

착공청원에 대한 의견서

1. 대흥동 30-38간(선통물천)도로개설 공사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주민 98%의 이주 및 우회도로 개설의 제반 문제점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동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며,
2. 차후 동 인근지역 개발시 별도의 도시계획 도로망이 확충되면 현재 계획추진중인 선통물천 진입로는 폐도와 동시 학교운동장 시설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함.
3. 행정기관에서는 본 청원과 같은 도시계획사업 계획수립시 이해 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하여 상충되는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공덕1동1-3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청청원심사보고서

1993. 5. 18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주소 : 마포구 공덕동 92-3

성명 : 이종서 외 143인

나. 소개의원 : 이천규의원

다. 접수일자 : '93. 5. 13

라. 회부일자 : '93. 5. 13

마. 상정일자 : 제16회의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3. 5. 18)상정의결

2. 청원요지

공덕1동 1-3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 74%의 동의를 받아 '92년 7월 마포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제와서 인근의 아현1동 일부와 공덕1동 11통지역을 포함하라는 이유로 미결상태인바, 소속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요청함.

3. 취지설명요지(소개의원 이천규의원)

청원인들의 청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공덕1동은 고지대 경사지에 입지하여 있고 대부분 30~40년전에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도시 저소득주민의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92. 8. 공덕 1-3지구 토지등 소유자 74%가 제출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신청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지구지정 고시되어야 하며, 북동측의 아현동 409번지 일대 일부와 남서측의 삼각형부지를 동지구에 포함하여 동시개발하려는 행정기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 다른 주택개발재개발사업구역 지정 요청 서류가 당구청에 접수되어 지역주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권오범위원) : 재개발은 대체적으로 동단위로 하는데 아현1동을 넣으라는 이유는?
- 답변요지(도시정비국장 신수목) : 동단위로 한다는 규정은 없음. 타구끼리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협동으로 해서 시행해도 무방함.
- 질의요지(전병만위원) : 청원서에 보면 주민동의가 74%이고,과장의 현황설명에서는 60%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 답변요지(도시정비국장 신수목) :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과 재개발 지정요구에 이 증으로 동의한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

6. 토론요지

김종열위원 :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

- 7.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심사결과 의견 : 별첨

공덕1동 1-3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요청청원에 대한 의견서

- 1. 청원인의 진정은 타당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나 또 다른 주택개발 재개발사업구역 지정 요청서가 마포구청에 접수되어, 동지구내의 주민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바,
- 2. 동 청원의 사업시행 방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정이 선행된 후 주민의 견수렴을 거쳐 사업추진 되어야 할 것임.
- 3. 관계기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개발 재개발사업에 대한 입법취지등을 정확히 홍보하여 개발방식에 대한 주민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조속히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해외연수 귀국보고서  
('93년 제1차 연수)

차례

- I. 연수목적, 배경 및 추진일정
- II. 연수개요
- III. 연수일정
- IV. 연수내용
- V. 각국의 제도비교
- VI. 평가
- VII. 발전방향

I. 연수목적, 배경 및 추진일정

1. 목적

역사상 최초의 자치구제의 채택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현대의 복잡다양한 주민의 욕구, 도시공공수요의 증가 및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하여 선진 지방의회 제도를 비교·시찰,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의회운영에 접목시켜 우리구 의회의 선진화, 민주화에 기여코자 함.

2. 배경

비교·시찰 대상국 선정에 있어 성공적인 지방의회제도를 운영중인 일본 등 동남아시아, 미주지역, 유럽지역 등으로 연수대상지역을 여러차례의 운영위원회 및 의장단회의를 통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 등 동남아 국가들은 연수 비용은 저렴하지만 제도, 문화적 행태가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연수의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었고, 미주지역의 경우는 연수비용이 높고, 각 주마다 제도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연수효과를 얻기 곤란한 반면, 서유럽 제 국가들은 현대적 조류인 주민자치형과 단체자치형의 통합적 접근으로 인하여 진정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짧은 연수기간동안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들 의회운영의 장점을 우리구 의회운영에 접목시켜 선진, 민주의회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유럽 4개국으로 선정하였으며, 연수방법은 의회운영의 정상화를 유지하고 연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3개반으로 편성,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개반의 연수를 완료함.

3. 추진일정

○운영위원회 회의 : '93. 1. 14